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의 경계부대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에 대하여 총진급인원의 10분의 3까지 조기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하여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진급 제한기간이 1개월이었던 것을 처벌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며, 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판결이나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판결이나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17. ~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전투부대”를 “전투부대 또는 경계부대”로,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투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2. 경계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3(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 나. 가목 외의 유죄판결: 2개월
2.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강등·군기교육: 3개월
 - 나. 감봉·휴가단축: 2개월

다. 근신·견책: 1개월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 제한기간은 종전의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④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기간을 별개로 적용한다.

제82조제2항 중 “기산(起算)”을 “기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의 진급 선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한 진급 제한기간이 이 규칙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경우 및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병의 진급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비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징계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병의 진급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u>전투부대</u> 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해서는 <u>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u> 진급시킬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32조(병의 진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전투부대 또는 경계부대</u>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u> ----- ----- ----- 1. <u>전투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u> 2. <u>경계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3(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u>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u>1개월의</u>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1. <u>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u> 2. <u>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u>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 ----- 1. <u>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u> <u>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강등된 계급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2조(보정명령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끝난 날부터 기산(起算)

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나. 가목 외의 유죄판결: 2개월

2.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강등·군기교육: 3개월

나. 감봉·휴가단축: 2개월

다. 근신·견책: 1개월

③ 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 제한기간은 종전의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④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기간을 별개로 적용한다.

제82조(보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산-----

한 다.

-- .